

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(대안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개정된 「국가정보원법」의 직무 범위를 반영할 수 있도록 국가정보원 직원과 관련한 위험직무의 범위를 정비함(안 제5조제4호).
-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으로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0배를 지급하는 대상을 경찰공무원이 아닌 공무원까지 확대하고, 지급요건을 ‘대간첩 작전 수행, 적과의 교전 또는 적의 행위로 인한 사망이나 무장폭동, 반란 또는 그 밖의 치안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’로 확대함(안 제39조제3항).
- 위험직무순직공무원과 그 유족에 대한 보훈 관련법상 예우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, 경찰·소방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에 대해서도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‘순직군경’으로 예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(안 제59조제2항제3호·제4호 삭제, 같은 조 제5항 신설).
-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상 재해예방을 위한 책무 규정을 마련하고, 국가기관의 장등이 해당 기관의 건강안전관리체제를 구축하도록 하며, 인사혁신처장이 건강안전협의회를 구성·운영할

수 있도록 하고, 재해예방사업 및 재할·직무복귀 지원 사업의 비용부담원칙을 정비하는 등 공무원 재해예방·재할 및 직무 복귀 등에 관한 체계를 구축함(안 제46조, 안 제46조의2·제46조의3·제46조의4·제46조의5·제46조의6 신설 등).

- 「국세징수법」 상 “체납처분”을 “강제징수”로 법률 용어를 정비함(안 제16조제2항 등).

II. 검토 의견

- 안 제46조의4제4항은 국가기관의 장 등이 전년도 ‘공무원 건강 및 안전에 관한 시행계획’의 추진실적 및 차년도 시행계획을 매년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것으로, 이는 공무원 건강 및 안전을 위한 시행계획에 대한 평가 및 환류가 가능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공무원 재해예방이 이뤄지도록 하려는 취지임.

- 그런데 개정안 부칙 제4조제2항은 국가기관의 장 등이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는 공무원 건강 및 안전에 관한 시행계획에 대하여 시행일의 다음 연도까지 수립하도록 하는 적용례를 규정하면서도, 해당 시행계획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는 규정하지 않고 있음.

인사혁신처장이 국가기관의 장 등으로부터 추진실적 및 시행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평가하고 보호조치 개선을 권고함으로써¹⁾ 실질적인

1) 「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」 제46조의4(기본계획의 수립 등) ④ 국가기관의 장등은 지난해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및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매년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⑤ 인사혁신처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 및 시행계획을 평가하여 공표할 수 있으며, 소속 공무원의 건강 및 안전에 대한 보호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기관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.

공무원 재해예방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할 때, 국가기관의 장 등이 안 제46조의4제4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에게 시행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는 적용례도 마련할 필요가 있음.

- 이에 부칙 제4조제2항에 제46조의4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행계획을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수정 의견을 인사혁신처와 협의하여 마련함.

<부칙 제4조제2항에 대한 수정의견>

개 정 안	수 정 의 견
부 칙 제4조(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한 적용례) ② 국가기관의 장등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까지 제46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행계획을 <u>수립하여야 한다.</u>	부 칙 제4조(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한 적용례) ② 국가기관의 장등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까지 제46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행계획을 <u>수립하고, 수립한 시행계획을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u>

- 그 밖에 체계·자구를 검토한 결과, 조문 내용에 맞추어 조문 제목을 명확히 하고, 부칙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등 일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자세한 수정사항은 주서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.

(전문위원 박 병 섭)